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16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김영호·김승원·윤영찬

양정숙 · 강민정 · 김병주

오영환 · 신현영 · 강병원

전혜숙 · 홍성국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 146개국 11세부터 17세까지의 남녀학생 신체 활동량 통계 분석에 따르면 운동량이 WHO의 권고 수준(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 이상의 신체활동을 말함)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81.1%에 달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운동부족 학생의 비율은 94.2%로, 분석 국가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음.

청소년기의 적당한 신체 활동은 신체 발달 및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주지만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학생들의 운동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 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3항 및 제60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신체적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제23조제2항·제3항"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교육과정 등) ①・② (생	제23조(교육과정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
	우 학생의 신체적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	
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	
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	
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	
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u>제23조제2항·제3항</u> , 제24조부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	
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